

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이훈미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8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2년 11월 22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13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fair1110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
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훈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2. 11. .

발 의 자 : 이훈미, 이길호, 신경원,
김귀근, 신금자, 이우천,
이동한, 박상현, 이혜승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4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
결정에 따라 2023년~2026년 군포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
급액을 확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2023년~2026년 군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 확정 (안 별표 3)

3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
- 「지방자치법」 시행령 제33조

군포시 조례 제 호

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(제2조제1항제3호 관련)

연도별	월정수당
2023년	월 2,540,920원
2024년	2023년도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(100%) 만큼 합산한 금액
2025년	2024년도 월정수당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(100%) 만큼 합산한 금액
2026년	2025년도 월정수당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(100%) 만큼 합산한 금액